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3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이용우·한정애·민병덕

김남근 • 백혜련 • 강유정

백승아 · 모경종 · 박주민

김교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, 소음·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·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,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 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.

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 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

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납세자의 인적 사항
- 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
- 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

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- 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: 국토교통부장관
- 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른 토 지대장 등본: 국토교통부장관
-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: 시·도지 사
-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과징금의 부과·징수
	<u>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5조제5</u>
	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
	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
	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
	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
	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
	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
	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
	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
	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
	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・정도
	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
	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
	③ 시・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
	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	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
	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
	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	1. 납세자의 인적 사항
	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
	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

출금액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 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에 따 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영 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 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

 건축물대장 등본: 국토교통부

 장관
- 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

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

 따른 토지대장 등본: 국토교통

 부장관
-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: 시·도지사
-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